

진정서

진정인

김OO (지문날인 거부자)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자 장여경)

진정 취지

동주민센터 인감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문날인(무인)을 강요하고 지문날인 없는 인감증명 발급을 거절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한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 덕연동주민센터의 장은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과 상급자 계장에게 관련 법률의 정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순천시는 인감증명청으로 이를 위임한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 업무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 동주민센터의 장들에게 관련 법률의 정확한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감독을 시행하고,

안전행정부는 일선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침 및 편람을 즉시 개정하고 주무행정관청 모두에 보급하는 한편, 나아가 인감증명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감 신고시 본인 무인을 받도록 한 시행령 제7조를 폐지할 것

을 권고하여 주십시오.

진정 이유

1. 본인의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해 온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인감증명 발급시 주무행정관청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많은 불편과 모욕감을 느껴 왔는 바, 진정인들은 인감증명 발급에 관련된 위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인감증명법에 따르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 한다”(법 제12조 제1항)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동법 시행령 또한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 임을 … 확인한 후 …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령 제13조 제4항 전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같은항 후단), 이 때 령 제7조제5항은 “증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증명청은 제1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라고 하였습니다.

즉, 관계 법령 어디에서도 신분확인이 완료된 인감 증명 발급 신청자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진정인1은 지난 5월 22일오전10시 경 순천시 덕연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센터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박OO)은 진정인1이 신분 확인과 자필서명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지문날인 없이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진정인1이 수차례 시정요구를 하자 상급자(김OO 총무계장)가 진정인1의 면전에서 담당 직원에게 발급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정인1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위 공무원들은 잘못된 관행에 대해 항의하는 진정인1에게 “하라면 해야 한다”고 강변하거나 “지침에 반드시라고는 안 나와있지만 지문으로 신분확인을 하지 못하면 인감증명 발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주민센터는 지문날인 없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진정인1은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고, 해볼 태면 해보라는 공무원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면서 울초 순천시 민원실에서 발생한 민원인 분신 사망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덕연동주민센터의 이러한 처분으로 인하여 진정인1은 해당일 여수시 울촌면사무소로 이동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은 지문날인 거부자라고 밝히자

추가적인 사항만 확인하였을 뿐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1은 지문날인 문제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는 비단 해당일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진정인1은 약 2년 전에도 왕조2동주민센터에서 같은 이유로 인감증명 발급을 거절당하여 여수시 신기동주민센터로 이동한 끝에 지문날인 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심지어 왕조1동주민센터에서는 담당직원이 진정인1의 손을 끌어다 지문날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정인1의 생각으로 이러한 경향이 심해진 것이 2008년 경부터로, 일선 관청에서는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 발급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행정 처분은 명백한 인권침해적일 뿐 아니라 위법적 관행입니다. 이 때문에 순천시 차원에서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4. 진정인2는 1998년 설립된 이후로부터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정보인권 운동을 해온 인권단체입니다. 진정인2는 최근 몇년동안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부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서 진정인1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시정을 위해서는 진정인1 관련 관청에 대해서 뿐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불편이 잇따르자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 사무를 감축하는 한편, 아예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해 당분간 두 제도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인감증명서 대체효과 미미”, 부산일보 2013. 4. 17).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시 지문날인을 요구할 아무런 법령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일선 행정관청에서는 지문날인 강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안전행정부가 지문날인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방침을 가져온 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관계 법령 어디에서도 신분확인이 완료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 현행 편람(2013. 11.)에서 이에 대한 서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편람은 시행령 제7조제5항, 제13조제4항에 무인 스캔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 것처럼 써 놓았는데(96면), 실제로 제7조제5항은 인감신고에 관한 것이고 제13조제4항은 인감발급 관련이기는 한데 서명 또는 무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사무편람에는 “인감신청인이 본인인 경우 무인 날인을 강요해서는 아니되며”라고 명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김정재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주무관, “행정도 ‘인권 감수성’ 높여야 한다”, 내일신문 2011. 12. 1) 최근 편람에서 이 서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인감민원 처리방법」에서는 신분확인사항으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전산자료(지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림1> 인감민원 처리방법

인감민원 처리방법

《 인감 주요 처리절차 》

신고관련	확인사항	등록	발급
신고관할(증명청) ● 주소지 읍·면·동 ● 등록기준지 읍·면·동 ● 체류지 시·구, 읍·면	신분확인 * ● 신분증 ● 주민등록전산 자료(지문)	대장작성 ● 신분사항 ● 인감날인 ● 신고인 푸인날인 ● 비고란 작성	발급기관 ● 증명청(시·군· 구) ● 읍·면·동 및 출장소

* 출처 : http://www.mosp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2&nttId=41546

* 강조는 진정한

인감증명을 대체해 나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문날인을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블로그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안내하며 다음과 같이 지문날인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림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체험해 보니...정말 편리해요! (2013/08/09 15:00)

1.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제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보니, 보안수단으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현재 PC등록은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 서류에는 임시 비밀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최초 1회 인증할때, 꼭 필요한 임시비밀번호니까, 보관해야 합니다.

* 출처 : <http://www.mospablog.net/11810980>

* 강조는 진정인

<그림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50% 인하, 수수료 부담없이 발급 가능!
(2013/10/16 13:51)

직접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① 신분증 제시 ② 지문인식 ③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용도를 구두로 말함 ④ 전자서명리더기에 서명 ⑤ 동사무소 장부에 수령 사인 및 수수료 300원 납부. 하나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인감도장을 가져가는 불편함 대신, 신속하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 출처 : <http://www.mospablog.net/11811058>

* 강조는 진정인

6.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근거 없는 인감증명 대리 수령자의 무인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결정 2008. 5. 29. 07진인3236.3239.08 진인831 병합).

헌법재판소 또한 비록 주민등록법 등 법률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그런데 하물며 인감증명 발급시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제도 자체가 폐지되려는 현재에도 굳이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부당함으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보다는 관행에 익숙한 행정기관이 제도의 규정을 빌미로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이외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7. 더불어 인감신고시에 본인 무인을 받도록 한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관련 규정은 모법인 인감증명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시행령만으로 지문이라는 고유한 생체정보를 요구함으로써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 일탈입니다.

본래 시행령 제7조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제2항에서는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 기재하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함께 방문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아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었으나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령부터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 기재하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하며 (이하 하략)”라는 내용으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사회적 토론 없이 주무 부처의 판단이 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부당합니다. 진정인들은 해당 규정을 2005년 전으로 원상복귀하는 것이 지문날인 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귀중